

8. 성폭력·성희롱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가톨릭꽃동네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이라 한다) 구성원이 성폭력 및 성희롱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 및 가해자에 대한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7.1. 자구수정)(2017.12.15.자구수정)(2021.6.22.개정)(2022.12.6. 자구추가)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라 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범죄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7.12.15.자구수정)

②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017.12.15.자구수정)

③ 2차 피해란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제12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2021.11.9.항추가)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는 교수(겸임교수, 초빙교수 및 시간강사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 이 가해자, 동조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및 성희롱을 포함한다.(2021.6.22.개정)(2022.12.6. 자구추가)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022.12.6. 개정)

①<삭제. 2022.12. 6.>

②<삭제. 2022.12. 6.>

③<삭제. 2022.12. 6.>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건처리 담당자는 사건처리가 종결되지 아니하고 과정에 있는 한 가해자 혹은 피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담당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2022.12. 6.항 추가)

제5조 2(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본 대학교 구성원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2.12. 6.조 신설)

제 2 장 담당기관

제 1 절 양성평등성상담실

제6조 (설치) 총장은 성폭력·성희롱(이하 “성폭력” 이라 한다) 예방을 위한 업무와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교내에 양성평등성상상담실(이하 “상담실”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2017.12.15.자구수정)

② 양성평등성상상담실(이하 “상담실”)은 본 대학교 직제규정 19조 ⑬항 및 인권센터규정 9조 ③항에 따라 인권센터에 둔다.(2022.12. 6.항 추가)

제7조 (구성) ① 상담실에는 양성평등성상상담실장(이하 “상담실장”)을 두어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2019.4.24. 개정).

② 상담실에는 성폭력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의 자질을 갖춘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상담원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남성 및 여성이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상담원은 학생생활상담센터 직원 1인과 교직원 중 1인이 겸직할 수 있다. 성폭력,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상담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2017.12.15.자구수정)(2019.4.24. 개정)

제8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2017.12.15. 자구수정 및 항목추가)

1. 성폭력·성희롱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및 기록
2.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보호 및 필요한 조치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의 보고
4.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5.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6.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 및 조사 요구

제 2 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총장은 성폭력 및 성희롱의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제10조(구성) ①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위원장은 인권센터장으로 한다. (2018.12.18. 개정)(2019.4.24. 개정)(2022.4.22.개정)(2022.12.6.개정)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2022.12.6항 추가)

③ 위원회는 당연직과 추천직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인권센터장, 양성평등성상상담실장으로 한다. 추천직 위원은 인권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학생 위원 1인 이상, 외부자문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학생위원은 학생 관련 사안에만 참석한다.(2018.12.18. 개정)(2019.4.24. 개정)(2022.4.22.개정)(2022.12.6.개정)

④ 사건 당사자들이 위원의 제척을 원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당해 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2018.12.18. 개정)(2022.12.6. 개정)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추천직은 당해 사건 종결 시로 한다.(2018. 9.18. 내용 수정)

제12조 (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조사 및 중재
2.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3.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4. 상담실 내규의 제정, 개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담실에 사건이 접수된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2017.12.15. 부분삭제)

- ②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안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신고 및 신고의 접수등) ① 상담실은 피해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 조사 및 피해자 보호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담실 이외의 학내 기관에서 신고를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상담실에 통지하여야 한다.(2022.12.6.개정)

②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2022.12.6.개정)

③ 상담실은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식 신고가 없더라도 상담실에서 인지하게 된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신고사건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2022.12.6.개정)

④ 상담실은 사건을 접수하고, 신고인의 인적 사항과 신고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접수서를 작성한 후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접수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접수 시에 피해자 등에게 규정상의 절차를 모두 고지하고, 원하는 사건 처리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22.12.6.개정)

⑤ 상담실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상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고한 대리인 또는 제3자도 피해자와 같은 보호를 받는다.(2022.12.6.개정)

⑥ <삭제. 2022.11 .>

제14조 2(사건의 조사 및 처리) ① 상담실장은 피신고인 등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22.12.6.신설)

② 피신고인 등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2022.12.6.신설)

③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처리할 수 있다.(2022.12.6.신설)

제14조 3(조정절차)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사건 당사사간의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2022.12.6.조 신설)

제14조 4(조사의방법) ①상담실은 다음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신고인, 피신고인 및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2022.12.6. 조 신설)

1.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한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한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전항 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센터에 진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제1항 2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④ 성폭력·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건의 경우에는 재발 방지 후속 조치 등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2022.12.6. 항 추가)

제15조 2(재심) ①피해자, 신고인 및 피신고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2022.12.6. 조 신설)

② 위원장은 재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지체없이 소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2022.12.6. 조 신설)

③ 소위원회는 재심의 사유를 검토하여 재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재심을 위한 재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재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2022.12.6. 조 신설)

④ 재심특별위원회는 그 구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사건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2022.12.6. 조 신설)

⑤ 재심특별위원회는 위원회 당연직 위원들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2022.12.6. 조 신설)

⑥ 제5항의 추천직 위원의 선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 위원장이 추천한 임시 외부위원1명을 포함한다.(2022.12.6. 조 신설)

1. 교원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5명의 교수위원

2. 직원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4명의 직원위원

3. 학생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1명의 학생위원

⑦ 재심특별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기준은 제13조와 같다.(2022.12.6. 조 신설)

⑧ 재심을 청구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2022.12.6. 조 신설)

제16조 (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권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해당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취한다.(2018. 9.18. 내용 수정 및 추가)

1.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2. 피해자의 민·형사상 구제에 필요한 지원 조치

3. 가해자에게 사과, 봉사, 교육, 배상 등의 조치

4. 가해자의 사건은폐나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 요구

5. 가해자의 자진 퇴사 등을 통한 징계 면탈 행위 방지

6. 가해자가 허위진술 하거나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 요구

7. 그 밖의 당해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제17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예방 및 재발방지조치

제18조 (예방교육) ① 상담실장은 매년 연초 다음 학년도에 실시할 양성평등 및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전문가의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의 구현에 관한 내용
2. 성폭력·성희롱 관련 법령
3.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5. 성폭력·성희롱을 행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6. 그 밖에 양성평등 및 성폭력·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상담실장은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7.12.15.신설)

④ 예방교육은 재학생 및 교직원(총장, 비정규직, 시간강사 등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집합 교육 참여를 의무화하며, 불참 시에는 사유서 제출 및 개별 온라인 교육으로 예방교육 참여를 대체한다.(2022.12.6. 자구수정)

⑤ 신규 교직원은 임용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폭력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한다.(2018. 9.18. 항 신설)

제19조 (재발방지조치 등) ① 총장은 성폭력·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17.12.15.신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